#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u> <u>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63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10.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04

www.uber.co.kr www.miraeneducare.com

# 위버지니어스

# 정보공개서

(주)미래엔에듀케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미래엔에듀케어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7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8, 3층(논현동, 건우빌딩) (주)미래엔에듀케어

대표전화번호: 02) 6933 - 5361 대표팩스번호: 02) 6933 - 536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 6933 - 5361 위버지니어스사업부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 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엔에듀케어
2007.4.18	2007.4.18	사업자등록번호 220-87-46770
		법인등록번호 110111-3662552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미래엔에듀케어	위버지니어스 외	지니어스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		
/10 <del>1</del> 1		1개	548, 3층(논현	년동, 건우빌딩)	
	(대표이사)한범석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사내이사)강윤구				
특수관계인	(사내이사)권혁춘		00) 0000	00) 0000	
(임원)	(사내이사)신광수	한범석	02) 6933 -	02) 6933 -	
	(사내이사)임채호		5361	5365	
	(감사)배수영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위버지니어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위버지니어스	위버(Uber,~이상의) +지니어스(Genius, 영재) 라는 뜻의 합성어			
상 호	위버지니어스 0 0 원				
상표(서비스표)	HA THE STATE OF TH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097376-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183197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기타 각종 서식 및 디자인 시안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6,391,054	2,028,102	4,362,951	7,051,357	-300,447	1,159,625
2023년	6,542,448	1,935,008	4,607,440	6,333,762	133,785	244,488
2024년	6,499,768	1,964,660	4,535,108	5,923,048	-152,945	-72,33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업 경 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2024.03 <sup>~</sup> 현재	(주)미래엔에듀케어	대표 총괄
	취비채	미교시기	2024.03 연제	대표이사	네표 궁힐
	한범석	대표이사	9091 09~청 케	(주)미래엔에듀케어	경영 총괄
가맹사업			2021.03~현재	사내이사	70 70 중월 -
관련임원			2020.06 ~ 2023.03	(주)미래엔에듀케어	대표 총괄
71.0.7	강윤구	사내이사	2020.00 2023.03	대표이사	내표 궁길
	(0 전 1	1	2023.03 ~ 현재	(주)미래엔에듀케어	경영 총괄
			2023.03 현계	사내이사	7000년
	권혁춘	혁춘 사내이사	2024.03 ~ 현재	(주)미래엔에듀케어	경영 총괄
	L 7 L	. 1 -11   1 1	2024.00 d711	사내이사	0005
가맹사업	신광수	총괄이사	2021.03 ~ 현재	(주)미래엔에듀케어	경영 총괄
비관련	L 0	0 린 기기	2021.00 현계	사내이사	7000년
임원 배수영		감사	2016.1 <sup>~</sup> 현재	(주)미래엔에듀케어	감사
ㅁ건	711 1 6	ים יו	2010.1 현계	감사	· ロ / \
	임채호	재무이사	2019.3 ~ 현재	(주)미래엔에듀케어	회계 자문
	U - 11 - 2	(11 1 11 1	2010.0 也利	재무이사	~ /   /   E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x] 7-}	임 원	수 (명)	직 워 수 (명)
시 섬	상근	비상근	직 원 수 (명)
2024년 12월 31일	5	1	6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구 분	기 간	사업 내용	
		가맹사업 경영	2011.1 ~ 현재	아담리즈수학(등록번호:20080100632) 라는 브랜드의 유아수학 학원	
기매보ㅂ	가맹본부 (주)미래엔 에듀케어	가맹사업 경영	2011.1 ~ 현재	위버지니어스(등록번호:20080100633) 라는 브랜드의 놀이학교	
/「留亡下		가맹사업 경영	2017.4 ~ 2023.2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딸기가 좋아(등록번호:-)라는 브랜드의 키즈카페)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 리 내 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등 록 만료일
위버지니어스	상표	2008.4.21 출원	출원 제2008-0010682	(주)미래엔	2029.3.27
(상표권)	사용	2009.3.27 등록	등록 제41-0183197	에듀케어	2029.3.27
위버	상표	2002.10.16 출원	출원 제41-2002-0020771	(주)미래엔	2024 2 10
(상표권)	사용	2014.2.16 등록	등록 제41-0097376-0000	에듀케어	2024.2.1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위버지니어스 가맹사업 현황

1. 위버지니어스를 시작한 날: 2007년 4월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8년 12월)

# 2. 위버지니어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가맹사업 경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758七十 3立	31표시 	이름	기간	구천 사구조의 조세시   
(주)한솔에듀케어	위버지니어스	민양규	2007.4 ~ 2008.8	강남구 역삼동 730-14
(주)미래엔에듀케어	위버지니어스	민양규	2008.9 ~ 2015.12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31,
(주)미래엔에듀케어	위버지니어스	권혁춘	2015.12 ~ 2020.06	102동 1층 105, 107,
				108호(구의동, 강변에스케이뷰)
(조)미 케시네드케시	د اد ادا حالیا	7) () 7	2000 02 ~ 0004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주)미래엔에듀케어	위버시니어스	강윤구	2020.06 ~ 2024.03	548, 3층(논현동, 건우빌딩)
(주)미래엔에듀케어	시다키고스치	=1 u1 z1	2024.02 ~ 청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악남디스누약 	한범석	2024.03 ~ 현재	548, 3층(논현동, 건우빌딩)

# 3. 위버지니어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위버지니어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뒤 비 시 니 어 스	기타 교육	놀이학교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위버지니어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022.12.31.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신세	수	수	겐세	수	수	신세 	수	수
전체	14	14	_	11	11	_	6	6	=
서울	6	6	_	3	3	_	2	2	-
부산	2	2	_	2	2	_	1	1	_
대구	_	_	_	-	_	_	-	_	_
인천	1	1	_	1	1	_	1	1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	_	_	-	_	-	-	-	-
경기	3	3	_	3	3	-	1	1	-
강원	-	_	_	-	_	-	-	_	-
충북	_	_	_	_	_	-	_	_	_
충남	1	1	_	1	1	-	1	1	_
전북	1	1	_	1	1	_	-	-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 5. 최근 3년간 위버지니어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2년	15	_	_	1	_	14
2023년	14	_	_	3	_	11
2024년	11	_	_	5	_	6

# 6. 위버지니어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 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丁正	경오/이금	정답표시	등록번호	표 중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	(주)미래엔	아담리즈	20080100632	유아수학	EE /O	G1 /O	62/0	
본부	에듀케어	수학	20080100632	학원	55/9	61/9	62/9	
가맹	(주)미래엔	위버지니	20020100622	놀이학교	14/-	11/-	<i>C</i> /	
본부	에듀케어	어스	20080100633	들이약꼬	14/-	11/-	6/-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000 41 d Th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매출액	면적	사치	면적	하한	면적	비고
	/1767日 1		3.3㎡당	상한	3.3㎡당	야안	3.3㎡당	
전체	6	392,982	3,073	1,284,000	8,474	35,018	404	6곳 산정





서울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_	_	-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_	-	_	_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_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_	-	-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_	-	_	_	_	5곳 미만
경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_	-	-	_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_	_	_	-	1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_	_	_	_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_	-	_	_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	_	-		_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교재 공급량을 회원수로 추정 × 평균 수강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위버지니어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위버지니어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6	3,290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위버지니어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위버지니어스]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3,581	_
판촉비	_	연중	_	_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 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 번호
국민은행	국민은행 서초남지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32-9	02-584-999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을 방문하신 다음 (주)미래엔에듀케어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위버지니어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17,017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일곱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_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대상	확정 금액
교 구 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오픈 준비 물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집기 비품	가맹점사업자 선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인테리어	미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홈페이지제작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보험 등)	가맹점사업자 선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영업개시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	위약금10%
가맹금	66,000	계약체결일	최초교육 미진행	최초교육을 진행하여 가맹본사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 받은 경우	최초교육비 33,000

2) 보증금 내역 해당사항 없음. (별도의 보증금 제도는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66,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금	66,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조건	비고
총 계		351,017	해당 없음			
교구비		99,000	해당 없음	계약체결일 50% 교구 입고 10일 전 50%	발주 전 계약취소	
오픈준비물품		17,867	해당 없음	교구 입고 10일 전	발주 전 주문취소	
집기비품	별첨1_1.	20,000	해당 없음			전제자품 에어컨 등
인테리어 (점포내장공 사)	거래상대방 참고	192,500	1,925	인테리어 계약시 50% 공사개시 30일 후 40% 공사마감 후 7일이내 10%	공사 전 계약취소	실평수 100평기준
홈페이지제작		1,650	해당 없음	가맹계약시	제작 전 계약취소	
기타 비용	가맹점사업 자 선정	20,000	해당 없음			간판, 홍보, 보험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text{m}^2$ 당 (11만원, VAT포함)의 기획관리비와, 간판 기획관리비로 당사가 견적한 간판금액의 11%(VAT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기존의 가맹점과 지역권이 겹치지 않는 지역 2.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중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을 통하여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지역 3. 입지 선정 후 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가맹점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종업원	가맹점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신입교사 교육을 이수한 자	유아교육 전공자 및 해당 과목 전공자 혹은 경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위버지니어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구매는 가맹점 사업자가 개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내역은 본 사 내방 시 오픈 준비 물품 리스트를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주)미래엔 에듀케어	5,060/분기				
상표사용료	(주)미래엔	1,540/월	매월 10일			서울/경기





	에듀케어	1,100/월				지방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정기교사 교육훈련비	(주)미래엔 에듀케어	550/반기	교육 10일전	교육 미이수 시 교육자료 미수령 시	교육실시	
점포환경개 선 비용부담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 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주)미래엔 에듀케어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로열티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협력업체	31/월		홈페이지 폐쇄 시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재가맹비	11,000	재가맹계약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2년 단위 연장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 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I-9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 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 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 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





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 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위버지니어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미 래엔에듀케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 니다.

※ 최초 가맹금은 가맹계약종료 후 반환되지 않는 소모성 금액입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위버지니어스]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위버지니어스			
정규 프로그램 위버지니어스 심화 프로그램 기타 가맹본부가 허락한 프로그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해당사항 없음.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만 집중 점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놀이학교	위버지니어스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행정구역 상 1개 동(洞) 동이 없는 지역은 1개 읍(邑)/면(面)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10km 이내에 다른 가맹점 설치하지 않음.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어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위버지니어스]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매저사업자에게 서며 통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위버지니어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 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0%	0.0%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0%	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위버지니어스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u>ئ</u> ۱۱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160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 100 D 0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Α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 00 E 1 E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_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로열티, 재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조1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8조2항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8조3항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8조4항
5. 위버지니어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8조5항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사연수) (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 는 비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18조6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상의 가맹금,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조1항1목
2.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업종의 타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가맹을 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조1항2목
3. '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5조1항3목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5조2항1목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15조2항2목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15조2항3목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15조2항4목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15조2항5목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107 07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15조2항6목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5조2항7목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15조2항8목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15조2항9목
경우	10-2-2-007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수정사유 발생 시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자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위버지니어스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통지 → 가맹계약서 작성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사업부
할 것	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	02-6933-5361
	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시 새로이 가맹금을 부담하지 않음.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위버지니어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귀하가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위버지니어스 사업부 02-6933-5361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위버지니어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해당없음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문의 : 위버지니어스사업부 02-6933-53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여 서면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정규 교사 4인 이상	직접 근무	전문 원장,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써 본사의 원운영 교육을 필한 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자	비고
원운영	담당자 원 방문 미팅	1회 / 분기	컨설팅사업부	
교육 관리	프로그램 운영현황확인	2회 / 연	교육개발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위버지니어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 습니다.

	구분	1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전	모집광고	100%	_	_
	개	별광고	_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제12조의6저 사전약정서	사업법 세1항에 따른   체결 또는 시 행사별로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촉	분담비	율 안내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을 오픈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맹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가맹금을 돌려받





을 수 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 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0일 내외	417,017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가맹본사 내방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제공	최초 문의 후 일정 조율 (3일)	
가맹심사	- 가맹희망자 심사 - 가맹희망 지역 타당성 심사	가맹상담 후 2주일 이내 (14일)	
최종 협의	- 개설승인	D-72~71(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7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69	66,000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제작 진행	D-40~20(20일)	1,650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건물 수배 - 주변 상권분석 실시	D-70~60(5일)	
건물계약	, , , , , , , , , , , , , , , , , , , ,	D-60 (3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계약, 설계, 시공	D-60~10 (50일)	192,500
오픈 교육	- 오픈 프로세스 교육 진행	계약 익일	,
교구 입고	- 교구발주 및 입고	D-60~10(50일)	계약 시 49.500 입고10일전 49,500
직원 채용	- 교사 및 직원 채용	채용 시까지	
지역 홍보	- 오픈 매뉴얼에 의한 지역홍보	지속 진행	20,000
교육 실시	- 신규원 교사교육 진행	D-20~15 (5일)	
원용품입고	- 오픈 물품, 집기비품	.D-10	37,867
원 오픈	- 학부모설명회 진행	D-7day	
영업 개시	- 수업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



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3	가맹계약 체결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 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기타설사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투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하여 점포환경개선의 끝난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무담액을 지급 시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을 지급 시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을 지급 시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을 지급 시절차 > ↑ 기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시절차 의 비용을 지급 시절차 등 공사비용을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재터에의 환루내부는 환로이본없로이약업되 부중에 모일이본없로이약업되 부중에 모일이본없로이약합의수 로이 본 경이 생각 가는은지 나 한 자계로 존해도 가부장비부지나 이 경환 존해도 가부장비부지나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경영자문 활동 해당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해당내용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위버지니어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오픈 교육	가맹사업자의 사업이해 및	강의식	가맹계약 체결	가맹사업자
	원오픈 준비 및 운영교육	73 FI FI	익일	필수교육
	신규 가맹점 개설시	강의식	교사구인	가맹사업자
신규센터 교육	원장 및 교사 교육		포자구인 완료시	교사
	직무 및 프로그램 교육	실습참관		필수교육
신입교사 교육	신입교사 입사 후 브랜드 및	강의식	신입교사	2월, 8월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교육	실습참관	입사 후	
정기교사 연수	반기별 프로그램 및 CS	강의식	반기별	교사
UTTC	직무 교육	성취격	반기 필	필수교육
원장 워크샵	원운영을 위한 비정기적 교육	강의식	비정기교육	원장
(운영교육)				자율참여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위버지니어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오픈 교육	3시간		
신규원 교육	5일	33,000	가맹금내에 포함
직영원 참관	5일		
신입교사 교육	5시간	100	개인 단위
정기교사 연수	5시간	550	교육원 단위
원장워크샵	3시간	_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 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센터 교육을 받으시지 않을 경우 원 오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입교사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는 정기교사 연수(UTTC)에 참석 할 수 없습니다.

정기교사 연수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원 등급제에 낮은 점수를 받고,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1! II + 1!+ /II =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처워, 부가세 미포함)

	(인기·엔인, 1/1/W 디스티/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딸기가 좋아 사업부(02-6933-536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 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한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은 당사가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에 따른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가"X"로 표시되더라도, 협력업체로부터의 판매 수수료 수익, 재판매 수익, 또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 개점 시 인테리어, 설비/집기 등 일시적인 공급품목(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은 제외되었습니다.





## 별첨2. 재무제표(2022~2023)

















## 재무제표(2023~2024)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